

January 11, 2024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관련 시사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11.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4. 3. 22. 시행됩니다.

I.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별 표시 내용 규정(개정안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을 별표 3의2로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19조의2 제3항).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별로 표시해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각 유형별로 표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표시해야 할 내용
구매 또는 사용시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하 “종류·등급·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등급·성능의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구매 또는 사용시 다른 게임아이템의 종류·등급·성능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그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종류·등급·성능의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복수의 게임아이템을 합성(특정 조합을 완성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종류·등급·성능이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합성의 결과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등급·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모든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
게임아이템의 구매·사용·합성 등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가 변경되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아이템의 구매·사용·합성 등에 따른 공급 확률정보 변경 내용
일정 횟수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개봉·강화 또는 합성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조건
그 밖에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확률형 아이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II.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정(개정안 별표 3의2)

1. 일반기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때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소수점 자리로 한정)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보다 분수, 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공급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게임물 이용자가 공급 확률을 알아보기 쉬운 경우에는 분수, 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시 의무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 활용하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포함)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오류 수정 등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게시해야 합니다.

2. 매체별 표시 방법

매체	표시 방법	
게임물 내	원칙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시
	예외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조회 또는 사용 화면의 크기에 비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확률을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 내에서 해당 확률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시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 활용하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포함)	원칙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
	예외	특정 이용자의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정보 중 해당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광고, 선전물	표시 대상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5)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표시 방법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화면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표시. 다만 웹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 광고, 선전물의 크기, 형식 등을 고려할 때 표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III. 문화체육관광부의 법 위반 사례 단속 계획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관련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3.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13.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이고 별도의 공지가 없다면 소비자는 적어도 이전과 동일한 확률이 유지되고 확률이 0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므로 게임상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기존과 동일하다'고 거짓으로 공지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혐의로 특정 게임사에게 시정명령 및 약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준수가 미비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이로 인한 유저 이탈 등 상당한 사업상 손실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전에 정보공개 방식이나 내용 등이 개정법령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아이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불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정부적으로 게임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동향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임은 물론 필요시 입법 단계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야 및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거래 분야는 물론, 게임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산업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박성진

변호사

T 02.3404.0937

E sunggene.park@bkl.co.kr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